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대통령령 제2957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한시정원

제42조(한시정원)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546”을 “549”로 하고, 일반직 계 “540”을 “5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1”을 “52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244”를 “6,714”로 하고, 일반직 계 “6,243”을 “6,7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14”를 “6,68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직업능력정책국 1개 과	3명	2019년 8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부와 협업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1명, 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